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564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김상훈 · 김선교 · 진종오
김형동 · 이현승 · 윤한홍
최보윤 · 엄태영 · 이종욱
이달희 · 최은석 · 조지연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각각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각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① (생 략) <u><신 설></u>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시정명령) ----- ----- ----- ----- -----. |
| 1. · 2. (생 략) 3. <u>제8조제1항</u> 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제1항 또는 제2항</u> ---- ----- 4. (현행과 같음) |
|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

| | |
|--|--|
| <p>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p> | |
| 1. (생약) | 1. (현해오가 같음) |
| 2. <u>제8조제1항</u> 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2. <u>제8조제1항 또는 제2항</u> ----- ----- |
| ② (생약) | ② (현행과 같음) |
|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호, 같은 조 제3항 각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 ① ----- ----- ----- ----- ----- ----- ----- ----- |

